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58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김현정·박홍배·이기헌

부승찬 • 전재수 • 손명수

이개호 • 정태호 • 김기표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과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

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2호 삭제).

법률 제 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①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			
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u><</u> 삭 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